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보건소 치과예방진료 및 처치부문에서 의료 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예방진료 및 처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치과예방 및 진료 비 보험수가 개정(안 제2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제2004-92호)

나. 예산조치 : 관계없음

다. 기 타 : 타 시·군 수가조례 현황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보건소 ·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성주군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예방접종 등에"를 "예방진료 예방접종 등에"로 하고, "치아홈메우기 비용은「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의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정한다."를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별표2〕 제증명 발급 수수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지역보건법시행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중 "의료보험법"을 각각"「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3조중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로 한다.

제8조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치과예방처치 수가기준표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진료 수가
치석제거	1/3악당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방문당 총 진료비
불소도포	전 악	
치아홈메우기	치아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료비 등 징수)(생략) 1. ~ 2.(생략) 3.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아홈메우기비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의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정한다.	제2조(진료비 등 징수)(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예방진료 예방접종 등에--------- ---------- ----------, 치과예방 진료비용은 수가 【별표1】과 같다.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①(생략) ②각종 제증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③(생략)	제4조(건강진단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①(현행과 같음) ②--------- 【별표2】 ----. ③(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